



Puget Sound Regional Council

제 6장(Title VI) - 공중에게 보내는 PSRC 통지서

Puget Sound Regional Council은 이로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1964년 미국 민권법 제 6장(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), 1987년의 민권회복법(Civil Rights Restoration Act), 환경정의에 관한 행정 명령 12898(Executive Order 12898 on Environmental Justice), 및 관련 성문법과 규정의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 이 기관의 정책이라고 공지합니다.

미국에서 어떤 사람도 인종, 피부색, 또는 출신 국적을 근거로, PSRC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목적인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서 배제되지 않고, 그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혜택을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고, 또는 달리 그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 6장(Title VI)은 요구합니다. 제 6장(Title VI)에 따라 불법적 차별 방식 의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PSRC에 공식적인 고소를 제기할 권리를 갖습니다. 모든 해당 고소는 주장된 차별의 발생일 후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PSRC 제 6장(Title VI) 조정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.

PSRC의 제 6장(Title VI) 계획, 절차 또는 관련 주제와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Michele Leslie에게 mleslie@psrc.org 또는 206-587-4819로 문의하십시오.